울생이 중구약한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만

의안 번호 769

발의년월일 : 2010년 6월 일 발 의 자 : 김영길·박문태·박홍규·

황세영 의원 (4명)

1. 개정이유

○ 정부조직법 일부개정(2008.2.29, 법률 제8852호)에 따라 국 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일부 흡수 통합됨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인용조문 변경(별표1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 - ▶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⇒ 제33조에 따라(안 제1조)
 - 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⇒ 제1항에 따른(안 제5조제2항)
- 3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울병의 중구역한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배정적인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33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별표 중 비고란 3의 "해양수산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<u>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	제1조 (목적) <u>제33조에 따라</u>
 제5조 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	 제5조 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) ①(현행과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</u>

【별표 1】

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	현지교통비	숙박비	식 비
	운 임	운 임	운 임	운 임	(1일당)	(1일당)	(1일당)
의 원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20,000	46,000	25,000

[비 고]

- 1.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- 3. 선박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769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

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0. 6. 8(화)

나. 제 출 자 : 박문태 의원외 3명

다. 위원회 회부·심사: 2010. 6. 9(수)·2010. 6. 15(화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문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정부조직법 일부개정(2008.2.29, 법률 제8852호)에 따라 국내여 비지급기준표 내용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일부 흡수 통합됨에 따라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내용중 해양수산부장 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인용조문 변경(별표1)
-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 - ▶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⇒ 제33조에 따라(안 제1조)
 - 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⇒ 제1항에 따른(안 제5조제2항)

4. 검토보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